

##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(제18조제1항 관련)

### 1. 표시도형



인증기관명:  
인증번호:



Name of Certifying Body:  
Certificate Number:

### 2. 제도법

#### 가. 도형 표시

- 1) 표시도형의 가로 길이(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: W)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 $0.95 \times W$ 의 비율로 한다.
- 2)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(좌·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)의 간격은  $0.1 \times W$ 로 한다.
- 3)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 $0.55 \times W$ 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,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 $0.75 \times W$ 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.

나.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,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.

다.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,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.

라. 표시도형 내부의 “전통식품”, “(TRADITIONAL FOOD)” 및 “TRADITIONAL FOOD”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, 하단의 “농림축산식품부”와 “MAFRA KOREA”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.

마. 배색 비율은 녹색 C80+Y100, 파란색 C100+M70, 빨간색 M100+Y100+K10으로 한다.

바.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.

사. 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.

아. 표시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, 포장재 구조상 옆면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